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440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44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22 선고 2002나165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 담당변호사 한BA외 2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C 담당변호사 김BB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22. 선고 2002나165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보험의 목적물인 건물 및 기계는 이 사건

부동산담보부보증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보험금은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변형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부보증은 담보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담보가치부족액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화재보험금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부보증운용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호 소정의 부동산담보 실행 또는 해지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중 원고가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등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실제로 회수한 돈이 265,288,921원(177,990,244원 + 87,298,677원)이므로 이 금액이 회수금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78,652,306원(보증원금 688,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담보실행에 따른 회수금 236,468,513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7,590,260원 -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회수금 265,288,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협약 제18조에 의할 때 1997. 12. 4.자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약관에 기하여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한 177,990,244원은 회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협약에 의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용보증부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충당 및 담보권이전에 대하여는 다른 신용보증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위 협약 제18조는 채권충당 및 담보권이전에 관하여 위 협약상의 그에 관한 규정보다 별도의 신용보증대출의 신용보증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정한 것일 뿐 보증채무이행범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약조항이 아니고, 또한 원고가 변제충당한 부분은 원고의 담보취득 후 해지된 5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97. 12. 4.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보증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용보증부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위 협약 제12조, 제18조에 관한 해석 잘못이나 제18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담보부보증의 보증채무 이행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